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4월 6일(수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유연백과장	(가격분석) 양정화사무관 2110-5457 (유가정책) 최세나사무관 2110-5458
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상원과장	조성중사무관 2150-2732
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노상섭과장	이병건서기관 2023-4375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학수과장 중소금융과 배준수과장	김성조사무관 2156-9875 김정주사무관 2156-9854

"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"

- 석유가격 TF 활동결과 발표 -

□ 정부는 「**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**」(4.6일)를 거쳐, 지난 1.13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·운영해 온 **석유가격 태스크포스**(이하 '석유가격 TF')**의 논의결과**와 **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**을 발표하였음

□ **석유가격 TF**는 석유가격에 대한 **투명성을 제고**하고 **유가 안정화 방안**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.18일 결성되었음

○ **지식경제부(장관: 최중경) 주관**으로 기획재정부,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, 석유협회 등 유관기관과 부처별 추천을 통해 선임된 **연구진이 공동으로,** 석유가격의 **주요 쟁점**에 대한 **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조사**하고, **주제별 심층연구와 토론을 진행**하였음

* 석유가격 TF 참여기관 : 지경부(팀장: 에너지산업정책관), 재정부, 공정위, 시민단체(소비자시민모임), 석유협회(정유사), KDI, 에경연, 민간 전문가 등
* 총 8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관계부처 회의(금융위 참여) 개최

1. 석유가격 TF 분석결과

가. 가격 결정방식

(1) 현재 정유사 가격결정방식 ⇒ 국제제품가 방식

□ 정유사는 **환율을 반영한 '국제제품가격(MOPS)*'에 관세·부과금, 유통비용, 이윤**을 더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고, 영업단계에서 **국내 시장 상황을 반영**하여 가격을 추가적으로 조정함

정유사 세전가격 = **국제제품 가격(환율)** + **관세·부과금** + **유통비용** + **이윤/시장상황**

* **정유사별로 차이**가 있으며, **지난 1주간**의 **평균**과 **전일 국제제품가격 변동폭 등**을 혼용
* Mean Of Platts' Singapore(MOPS, 싱가폴 국제제품가격) :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가격으로 Platts社가 발표

(2) 가격방식이 논란이 되는 이유

□ **석유제품**은 **통상 30~45일전*** 선적한 원유로 생산하므로 **국제유가 상승기**에는 시가보다 **저렴하게 도입**한 **원유로 생산**함. 따라서 **원유가 방식****으로 **가격을 결정**할 경우 **국제제품가 방식**보다는 **석유제품 가격**을 **낮출 수 있다는 지적**이 제기됨

* 중동지역 원유도입에 2주~1달, 하역후 정제설비 투입·생산까지 1~2주 소요
 - 정유사-산유국간 도입가격 결정방식은 통상 선적월 평균가 또는 선적월과 하역시점의 평균가 등 혼용

** 원유도입가를 기본으로 생산비용, 유통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가격결정
<예시> **원유도입가격** + **세금** + **생산비용**(정제비 등) + **유통비용** + **적정 정제마진** 등

□ 또한 국제제품가 방식이 **국내 수급상황**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석유시장에서의 **경쟁을 제한**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

○ 국내 정유사의 생산비용과 큰 관련없이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**비용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고** 국내 정유사는 수입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국내외 가격격차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**수입을 통한 경쟁 기회**를 **축소할 우려가 있음**

(3) 원유가 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

□ **원유가 방식**은 **생산비용**에 따라 **가격을 결정**하므로 정유사의 **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**을 촉진할 수 있으나, **경쟁**이 **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인하 효과**를 기대하기는 **어려움**

□ **경쟁이 불충분**한 석유시장 여건상 **원유가 방식**으로 **가격을 안정화**하기 위해서는 **가격 적정성**에 대한 **상시 모니터링이** 필요함

○ 그러나 **연산품**(joint product) 특성상 **원가산정**이 **어렵고, 적정이윤** 등에 대한 **객관적 평가기준** 마련과 **상시 모니터링**에 한계가 있음

* 원유를 정제할 경우 휘발유(11.9%), 경유(28.5%), 등유(4.1%), LPG(3.5%) 등 시장가치가 상이한 20여개 석유제품이 동시생산됨('10년 국내생산량 기준)

(4) 국제제품가 방식의 한계

□ **원유가**(원가에 해당)**와 무관**하게 **국제시장의 제품 수급상황**에 따라 **국제제품가가 급등**할 경우, **국내가격**도 **급등하게 됨**

○ 이 경우, **국내 수급상황과 무관**하게 **정유사의 이익이 증가**하게 되며 전부 **국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**으로 전가됨

* 국제휘발유가와 원유가의 차이가 **최대 136.07원/L**까지 발생(**'07.5월 평균**)

○ 한편, **국제제품가**가 **국제 원유가보다 낮은 시기**에는 **정제손실이 발생하기도 함**

* 국제휘발유가와 원유가의 차이가 **-21.45원/L**까지 발생(**'08.11월 평균**)

(5) 평가

□ 각 가격결정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**석유가격의 투명성**을 높이고 **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**이 중요함

○ 근본적으로는 **국내 석유제품시장 개설을 통해 국내 수급요인을 반영**하는 **국내가격을 도출**할 필요가 있음

나. 가격 비대칭성

□ **(검토배경)** 소비자들은 국제유가에 비해 **국내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의구심**을 가지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

□ **(비대칭성 개념)** 비대칭성을 국제유가(원유가, 제품가)가 오를때의 국내유가 조정폭과 내릴때의 국내유가 조정폭이 상이한 현상으로 정의하였음

□ **(분석결과)** 분석기간 중 항시 비대칭성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, **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가 상당수 확인**되었음

* 참고 1 : 석유가격 비대칭성 선행연구 결과 요약
* 참고 2 : 석유가격 비대칭성 분석 결과

[계량 분석]

○ **('97.1~'07.5) 정유사 가격**은 원유가, 국제제품가와 **비대칭 발생**

* '97～'03년 정유사 가격은 월간단위로 조정된 고시가격(실판매가격과 상이)으로 비대칭성 결과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음

○ **('08.5~'10.12, '09.1~'11.2) 정유사 가격**은 **국제제품가와 비대칭 발생**

○ **주유소 가격**은 분석기간과 상관없이 국제유가에 **모두 비대칭**

[주간 가격차 분석]

○ **'10년 정유사 가격**은 **국제휘발유**보다 **38원/ L**(주평균 0.73원/ L) **주유소 가격**은 **29원/ L**(주평균 0.54원/ L) 더 인상하였음

□ **(발생원인 및 시사점)** 비대칭성 발생원인은 경쟁정도,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태* 등 다양하게 분석되었으며, 석유시장의 **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감시를 강화**하여 **비대칭성을 완화**할 필요가 있음

* ① 정유사는 월말에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 ② 소비자는 주로 유가 상승기에 저가 주유소를 탐색하고 판매가격에도 민감

다. 석유제품가격 인하여력 분석

□ **(검토배경)** 석유제품은 **연산품**(joint product)의 특성상 **원가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** 때문에, 석유제품의 **국내외 가격차 추이와 제반비용**을 고려하여 석유제품가격의 **인하여력**을 **상대적으로 비교·분석**하였음

① **(국제제품가와 원유가의 차이) 최근 국제제품가는 원유가보다 크게 증가**하고 있는데, 정제비용의 인상요인이 없다면 **국내수급과는 무관하게** 국내가격이 상승한 것임. 이는 **정유사간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인하**를 할 수 있는 여력으로 볼 수 있음 **('11년은 '09 대비 22.8원/ L 증가)**

* 국제제품가와 원유가의 차이(원/L): ('08)48.9→('09)51.8→('10)58.7→('11.1-2)74.6

② **(정유사 공급가와 국제제품가의 차이)**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과 국제제품가격의 차이는 국내 유통비용과 유통마진을 말함

- 최근 동 가격차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데, **국내에 한정된 생산비용의 증가요인이 없으면 경쟁촉진을 통해 축소**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**('11년은 '09 대비 10.3원/ L 증가)**

③ **(최근 주유소 가격추이)** 주유소 단계에서 **'원가'**는 **정유사의 공급가**이며, 세금을 제외하고 주유소 단계의 비용 인상요인이 없으면 **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증가**한 만큼 **주유소 단계의 가격도 증가**함

- 작년 연말과 비교할 때, **주유소 가격**이 **정유사 공급가 상승분**보다 **빠르게 상승**하였는 바, 이는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음 **('11년은 정유사 공급가 상승분(103.4원/ L) 대비 20.5원 가량 더 상승(123.9원/ L))**

2.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

가.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

□ **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**

○ 석유제품의 가격공개제도를 확대하여 **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**하여, **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**하겠음

○ 우선, 금년 4월까지만 공개하기로 하였던 **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**을 **2014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**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

○ 또한, 현재 공개되고 있는 **정유사의 판매가격은**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지만, **향후 대리점,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가격을 공개**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

- 공개되는 정유사 판매가격의 세분화가 **영업비밀 침해 등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지** 여부에 대해서는, **금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토**할 예정임

○ 한편, 공개되는 석유제품의 범위에 LPG(액화석유가스)까지 포함시켜 앞으로는 **LPG 충전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도 공개**하겠음

나. 석유시장의 경쟁촉진

□ 제6의 독립폴 신설 지원

○ 현재, 6%에 불과한 **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**하여 **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** 등 석유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**소비자 가격 인하에 기여**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

○ 무엇보다, **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**라는 현실은 **석유제품의 공급뿐만 아니라, 유통시장에도 큰 영향**을 미치므로, 최근 독립폴로 자리잡은 농협의 NH-OIL폴에 이어 **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**하겠음

○ 자가폴 주유소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, **「자가폴 주유소 협의회(가칭)」를 설립**하여 구심점을 구축하고, 이들의 **공동구매가 가능**토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임

○ 동시에, **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등 경쟁촉진**을 위해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**전체 주유소 대상 신용카드 위주**로 **주유할인 혜택이 제공**되도록 유도할 계획임

□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

○ **국내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석유제품 가격**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, 국내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겠음

○ 우선,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**금년말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**하고, **2012년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** 하겠음

○ **정유사-대리점-주유소의 수직적인 거래관행을 깨고**, 많은 석유사업자들이 석유제품 거래시장에 참여하도록, 전자상거래 참여시 **법인세·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, 법적기반 수립**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

다. 석유시장의 공정성 확보

□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

○ 국제유가 상승기에 **정유사는 원가절감, 유통비용절감** 등을 위해 노력하고, 셀프주유소 확대, 가격표시판제도 준수, 유사석유추방 등 **공정한 유통시장을 선도할 필요**가 있음

○ 서민 난방연료 가격인하, 사회공헌활동의 내실화 등 **석유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**하는 등 **소비자와 진정한 소통**을 해야 함

○ 이를 위해, **정부는** 가격의 비대칭성, 석유가격 안정화 노력, 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한 **정유사별 '사회적 책임경영 성과'를 평가**할 계획임

라. 향후 검토 과제

□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

○ 정부는 **특정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(예 : 혼합판매) 없이**도 **他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**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

* (예) SK폴 주유소에서 SK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 판매 가능
* 現 모범거래기준(권장사항) : 정유사폴 주유소에서 타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판매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원칙적으로 저장탱크·주유기를 분리할 것을 권장
* 이해관계자 의견수렴·법률적 검토를 거쳐 모범거래기준 개정 결정

○ 우선, **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제도를 완화**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**정유사간 석유제품의 품질차이 유무를 조사**하고,

○ **외국사례 조사, 국내유가 및 석유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** 등에 대한 **연구용역을 실시**할 계획이며,

○ **소비자 단체와 정유업계 및 주유소업계** 등 **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** 등의 **공론화 절차**를 거쳐 **추진여부를 최종 결정**할 것임

□ 또한, 향후 유가추이를 고려하여 **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** 등 **고유가 시대**에 대비한 **유가인상 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** 수립

□ **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** 등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등 **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**할 수 있는 **방안 검토할 계획임**

※ 상기 내용은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(4.6일)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.

참고 1 | 석유가격 비대칭성 선행연구 결과 요약

국가	연구자	조사기간 (주기)	원재료 가격변수	제품 가격변수	비대칭성 유무
한국	나인강(2002)	91.1.-00.12. (월별)	원유도입가	소매가	대칭
	문영석(2004)	85.1.-04.5. (월별)	원유가	도매가	비대칭
	이달석(2005)	97.4.-05.6. (월별)	도매가	소매가	대칭
		97.4.-05.6. (월별)	원유가	도매가	비대칭
	임상수(2007)	97.1.-07.5. (월별)	원유가	소매가	대칭
		97.1.-07.5. (주별)	원유가	소매가	비대칭
	오선아·허은녕 (2007)	97.1-06.12 (월별)	국제제품가	소매가	대칭
			원유가	소매가	대칭
			원유도입가	소매가	대칭
	김진형 (2007)	97.1-07.6 (월별)	원유가	도매가	비대칭
	김진웅·김종호 (2009)	01.1-09.1 (주별)	원유가	소매가	비대칭
		01.1-09.1 (주별)	국제제품가	소매가	대칭
		08.04.15-12.31 (일별)	원유가	소매가	비대칭
		08.04.15-12.31 (일별)	국제제품가	소매가	대칭
미국	Bachmeier and Griffin(2002)	85.2.-98.11. (일별)	원유가	도매가	대칭
	Kaufmann and Laskowski(2005)	86.3.-92.12. (반월별)	원유가	소매가	비대칭
	Radchenko (2005)	91.3.-03.2. (주별)	원유가	소매가	비대칭
영국	Bacon(1991)	82-89(주별)	원유가	소매가	비대칭
	Manning(1991)	73-88(월별)	원유가	소매가	비대칭
캐나다	Godby et al(2000)	90-96(주별)	원유가	소매가	대칭
스웨덴	Asplund et al(2000)	80.1.-96.12 (월별)	원유가	소매가	비대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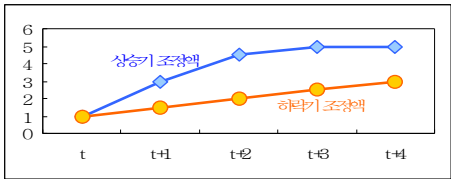
* 「대칭」이라 함은 통계분석 결과, 비대칭성을 발견하지 못함을 의미

참고 2 | 석유가격 비대칭성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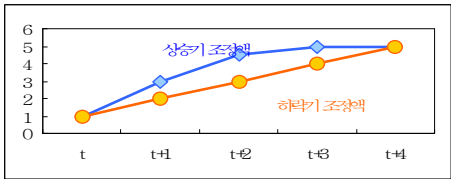
① **비대칭성**은 국제유가(원유가, 제품가)가 **오를때의 국내유가 조정폭**과 **내릴때의 국내유가 조정폭이 상이**한 현상

*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내유가가 최종 조정되는 금액이 상이하거나(그림1), 최종 조정되는 금액은 같더라도 조정폭·속도가 상이한 경우도 포함(그림2)

(그림1) 비대칭성 CASE1



(그림2) 비대칭성 CASE2



② **비대칭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계량분석결과**

- 비대칭성이 항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**비대칭성이 발견되는 사례**가 **상당수 확인**되었음

·국제가격이 상승할 때의 국내가격 조정액이 국제가격이 하락할 때의 국내가격 조정액보다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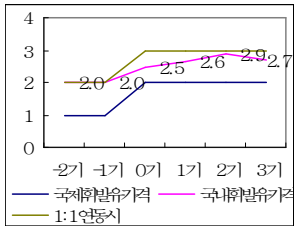
- **('97.1~'07.5) 정유사 가격**은 원유가, 국제제품가와 **비대칭**
- **('08.5~'10.12, '09.1~'11.2) 정유사 가격**은 **국제제품가와 비대칭**
- **주유소 가격**은 분석기간과 상관없이 국제유가에 **모두 비대칭**

<비대칭성 예시> '09.1~'11.2 국제휘발유가격과 국내정유사공급가격(주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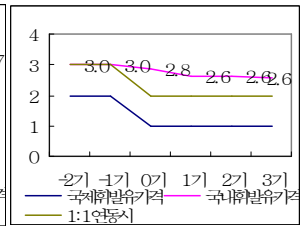
○ 국제휘발유가격 1원 변동시 국내정유사 공급가격 조정액

- 첫주 조정액 : 상승기 0.478원 > 하락기 0.151원
- 4주간 누적조정액 : 상승기 0.684원 > 하락기 0.410원

가격 상승기



가격 하락기



상승기/하락기 조정액 비교

